

의안번호	2219377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2.
추 계 번호	26A3770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7조의5 신설(신고 및 신고자 보호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접수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6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67조의5 신설(신고 및 신고자 보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중소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관련 부당개입행위 신고 또는 제보(이하 "신고등"이라 함)의 접수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신고자 및 제보자(이하 "신고자등"이라 함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가 설치·운영되고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"부당개입행위"란 정책자금융자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하는 대출을 말함)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융자 신청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정책의 목적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(안 제67조의2 신설)¹⁾, 누구든지 부당개입행위를 알게

1) 안 제67조의2(부당개입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정책자금융자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66조에 따라 시행

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
등을 할 수 있음(안 제67조의5제1항 신설)

□ 개정안이 시행되어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
근거가 마련될 경우 정부에서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인 관련 재정사업
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개정안에 따른 부당개입행위 신
고센터의 운영 규모·방식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신고등 건수 및 포상
금 지급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 및
규모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4개 정책금융기관과
함께 ‘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’를 발족하고²⁾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
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 중으로, 2026년 1월 1일부터 정책금융기관별
홈페이지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이며 2026년 8월 말 기
준 접수 및 조치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정책금융기관별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접수 및 조치건수

('26.8.31.기준 / 단위: 건)

구분	접수	조치건수						단순 민원
		소계	조사 중	자체처리	금감원 신고	수사의뢰	검찰송치	
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	437	414	10	401	—	2	1	23
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	161	149	8	135	—	5	1	12
기술보증기금	20	15	—	13	—	2	—	5
신용보증재단 중앙회	18	18	4	11	1	2	—	—
합계	636	578	18	549	1	11	2	40

주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건, 기술보증기금 1건,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건에 대하여 총
2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하는 대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(이하 “신청기업”이라 한다)의 정책자금융자 신청
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정책 목적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행위(이하 “부당개입행위”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·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행위
2.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제1호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(敎唆)·알선하는 행위
3. 정책자금융자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신청기업으로 하
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·과장·기만적인 표시·광고 행위
4.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관련한 자문, 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그 밖의 조력을 제공한 대가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,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(收受)하거나 요구하는 행위

2)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, 2025. 12. 26., “중기부,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가동”

- 또한,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」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‘제3자 부당개입 방지인프라’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4억 7,700만원을 편성함

※ [참고자료]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인프라 사업 개요

[표 2] 제3자 부당개입 방지인프라 사업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-내역사업명 (회계, 코드)	내용	2027년 예산안
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-제3자 부당개입 방지 인프라 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, 1253-301)	제3자 부당개입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, 법률 자문, 수사연계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신고포상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정책자금 환경 조성	477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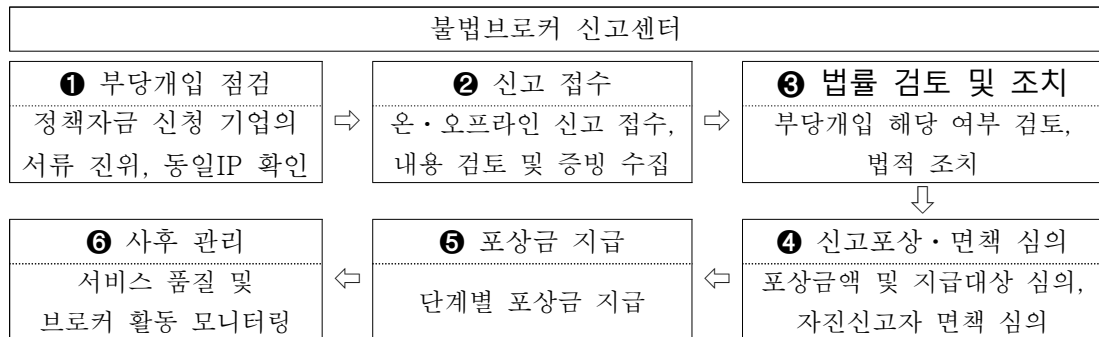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인프라 사업 개요

(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)

- **(사업목적)**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예방·근절하고, 공정한 지원사업 참여환경 조성을 위한 신고 및 피해 구제 서비스 제공
- **(사업기간)** 2027년 ~ 계속
- **(지원대상)** 정책자금 신청 기업 및 이용 기업
- **(지원내용)**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부터 증빙자료 수집, 법무 지원, 신고포상까지 전방위적 대응
- **(사업절차)**



- **(법무전담팀 추진 프로세스)**

【사업추진 프로세스】

